

KDI 금융포럼

금융행정혁신: 이슈, 권고안 및 과제*

2018.4.9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 이 자료는 금융행정혁신위의 금융행정혁신 보고서(2017.12.20) 및 금융위 보도자료(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이행계획, 2018.1.17)를 토대로 'KDI 금융포럼' 발표 용으로 작성하였음

<목차>

I. 서론

II. 금융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III. 인 · 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IV.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 방안

V.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VI. 마무리

Q&As

I. 서론

I. 서론

◆ 금융행정의 역할

- 금융규제체계/금융감독체계 => 금융(산업·감독)정책 => **금융행정** => 금융산업/금융시장

◆ 소주제별로 분과 구분

- (제1분과)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제2분과)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 (제3분과)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제4분과)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 진행

- 2017.8.29: 출범
- 2017.10.10: 민간연구소 의견 청취
- 2017.10.11: 중간브리핑
- 2017.12.20: 최종권고안 발표, 금융위에 제출
- 2018.1.17: 금융위가 이행계획 제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계획(안)')

I. 서론

◆ 금융행정혁신을 보는 다양한 시각

- (혁신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을 추진하자'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따라 혁신위 내부에도 시각차이 존재 → 최대한 극복 노력
- (금융위) 출발 이후 중간브리핑 까지 혁신위와 금융위 간 시각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 중간브리핑 이후 괴리 발생 → 종료시점 전후로 다소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언론 등) 금융감독체계 논의 및 금융산업진흥 관련 논의 부재

◆ 협력관계 등

- 자료와 행정 지원: 금융위와 금감원
- 혁신위의 재량권
- 보고서 집필

II. 금융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II.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1.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2. 검사·제재 행정의 개선
3. 행정지도의 축소
4.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
5.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에 대한 관리 강화
6.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
7. 차명계좌 종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견희 차명계좌 처리

1.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1/2)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의 자세한 공개

- 현재 지나치게 간단히 작성되어 공개되고 있는 금융위 및 증선위 의사록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시장에 공개
 - 최소한 한은 금통위 의사록 수준만큼 자세히 작성: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책임성 강화
 - 의사록 작성 내용과 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화
 - 비공개 사유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허용,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사록 공개 원칙 유지
 - 비공개 기간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금융위와 증선위 안건에 포함하여 의결하고, 비공개 기간 이전이라도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면 공개하도록 함
- 금융위 및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자문회의 등 포함)의 경우도 자세한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

◆(금융위) '금융위/증권위 운영규칙' 개정하여 의사록 작성 · 공개 시행 중('18.1월)

1.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2/2)

- ◆ 금융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감독규정(금융위의 감독규정과 금감원의 감독규정시행세칙) 제·개정 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확보
 -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해당 의견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의 검토의견을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동시에 그러한 사항을 공개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함
 - 검토의견에는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 그리고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투명성 제고
 - (금융위) 의견회신 개별통지 점검관리 강화하고 의견 회신현황을 공개하는 방안 추진('18.1월)
 - 금융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이를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할 필요
 - (금융위) 「금융위 운영 규칙」 관련규정 개정 완료('18.1월)

2. 검사·제재 행정의 개선 (1/3)

◆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문제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과중한 검사부담 완화

- ‘검사 자료 요구 최소화 원칙’을 규정화
-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자료 요구 현황과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 내지 중복 자료 요구를 줄여나갈 필요
- 금감원의 검사 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동검사기관인 한은 및 예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금감원의 여러 검사 부서가 동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한 협업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부담을 줄여줄 필요
- 금융기관이 사전에 검사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매년 초 금융기관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사전에 발표할 필요
 - 다만 최소한의 규모일지라도 불시 무작위 검사를 유지하여 검사·제재 효과 극대화를 도모
- 검사 종료 후 검사원이 검사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제재 조치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집중처리기간 중인 검사역은 다른 검사 및 출장에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

◆(금융위) 금융회사 검사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요구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자료 이력 검색 효율화를 위해 관리시스템 개선(‘18.上)

2. 검사·제재 행정의 개선 (2/3)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부의예정 안건 내용 중 ‘최종 조치 수준이나 양정 기준’도 사전 열람 대상에 포함시켜 부의예정 안건 전체 열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제재 예정 조치에 대한 對審제도 도입방안을 검토
 - 대심제도 도입 시 제재심의 시간 장기화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제재 조치 예정 사안에 한정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소부(小部)(예를 들어,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금감원) ‘18.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 對審제 도입

2. 검사·제재 행정의 개선 (3/3)

◆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

- 국가배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상의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
- 만약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금감원 검사원의 면책 근거를 규정할 필요
- 이렇게 될 경우, 금감원 검사원이 금융기관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처방 중심의 검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위) 법무부 유권해석 추진 ('18上)

3. 행정지도의 축소

- ◆ 행정지도 대신에 관련 감독규정(금융위 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금감원 제정)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
 -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예: 반기별)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게 하고, 필요하면 해당 행정지도의 폐지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통제할 필요
-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창구지도나 그림자규제 등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
- ◆ (금융위) 행정지도 운영 관련 평가 내실화, 행정지도 사후 보고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18下)

4.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 (1/2)

◆기축법의 편익과 비용을 면밀하게 감안하여 시효연장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함

- 정기적으로 시효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는 현재의 관행은 정책 불확실성 제거라는 관점에서 지양될 필요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 공급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체제 구축 로드맵』을 작성하고,
-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consensus를 확보한 후,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반복적인 기축법 시효 연장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금융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기축법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국회와 협의해 결정

4.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 (2/2)

◆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부가 '산경장'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결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조치 강구

- 산경장을 통한 협의와 조정이 이해관계자 요구나 정치권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
- 산경장에서 산업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반 환경 및 전략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 확립

-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감독적 조치 도입을 검토
 - 부실채권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강화를 통한 부실채권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이에 더하여 부실채권 조기 매각을 위한 정책적·감독적 차원의 촉진방안 검토
- 민간 구조조정펀드에 대기업 구조조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참여하여 민간 구조조정 역량 배양을 지원

5.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에 대한 관리 강화 (1/2)

➤ 현황 및 문제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16.9월말부터 시행

- 공무원 등이 일정 규모(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연 관성 없어도 처벌 → '18.1.17일부터 (식사대접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 부정청탁금지법에 더하여 공정위는 작년 10월말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발표

<표 II-1> 공정위의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요약)

		등록 대상 외부인		등록대상 아닌 외부인
		등록자	미등록자	
사무실내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 (서면보고) ☞ 단, 윤리준칙 미준수시 1년간 접촉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 - 단, 위원회 참석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 (서면보고 없음)
사무실외 접촉	직무 관련 有	- 금지(부득이한 접촉시 서면보고)		
	직무 관련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서면보고) - 단, 윤리준칙 미준수시 1년간 접촉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 (부득이한 접촉시 서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 (서면보고 없음)

5.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강화 (2/2)

- ◆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감독 및 정책 담당자의 외부인 접촉문제는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 바람직**
 - 금융부문에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을 신속적으로 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자주 발생
 -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업계나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분야에 까지 외부인과의 접촉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현장과 괴리된 행정이나 시기를 놓친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다만,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은 필요**
- ◆ (금융위) '18.3.28 외부인접촉관리규정(금융위 훈령, 금감원 규정) 제정

6.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 (1/3)

➤ 현황 및 문제점

◆ 개념적 구분

수단\목표	금융산업진흥	금융감독*
정책업무	A	B
집행업무	C	D

* 건전성감독과 행위규제 포함

** A와 B는 금융위 소관(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 설계),

C와 D는 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등 소관(법령 등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규정의 제·개정 및 실제 시행),
단 B의 금융감독정책(예: 인허가 정책) 업무를 A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사례

- 케이뱅크 인가
- 초대형 IB 인가
- 보험권 재무건전성 미확보
- 최근의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

6.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 (2/3)

- ◆ 국내 금융에서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산업진흥정책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상호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함
- ◆ 업무목표와 추진수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추진토록 권고함
 - 업무 목표와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은 서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므로 개념을 적절히 정리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업무 추진수단과 관련해서는 특히 금융감독업무의 정책부분(제도 설계 등)과 집행부분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시장 밀착형 감독이 정착되도록 추진함
 - 시장 변화와 정보를 보다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감독규정(금융위)보다 시행세칙(금감원)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

6.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 (3/3)

- ◆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금융 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함
 - 큰 틀에서 금융산업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와 금융감독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나누어 어느 한 쪽 부서에서 특정한 정책을 입안시 다른 부서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 등을 마련함
 - 그리고 업무수행 측면에서 금융산업정책 결정시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게 하고 그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는 등 정책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
- ◆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8월)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참고)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국정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7. 차명계좌 중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견희 차명계좌 처리 (1/2)

- ◆(일반적으로)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함
 - 금융실명법에 차명계좌도 실명 전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다만 소위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
 - 가족명의, 자녀명의, 문중회나 동창회 자금관리 등을 위한 개인 명의 계좌 등
-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고함
 - 이견희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7. 차명계좌 중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견희 차명계좌 처리 (2/2)

◆ 금융실명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

-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므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
 -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
-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함**
 - 1993.8월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의 경우 우선 자금의 출처가 비정상적인 자금세탁 행위와 결부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는 상황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
 - 배당과 주식의 가치 증가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다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면서 주식의 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 미비로 판단
- **(‘18.2.12 법제처 유권해석):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제1항 및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같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III.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Ⅲ.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1. 케이뱅크 인가와 향후 개선방안
2.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
3. 인·허가 절차 개선
4. 금융업종별 진입/퇴출 정책 방향
5. 진입 및 영업 규제의 네거티브화

1. 케이뱅크 인가와 향후 개선방안 (1/4)

➤ 현황 및 문제점

◆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요건 충족 여부

- 은행업 인가 신청회사의 대주주(우리은행=10%)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상 요건(즉 '동종업종 재무건전성 기준의 평균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 :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 2015.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14.00%)이 국내은행 평균(14.08%) 미달
-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8>: 1. 영 제5조 <별표 1> 제1호 가목 관련
 - 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 이상일 것**

◆ 금감원 검토의견서(2015.11.3.)

- '은행업 감독규정상 문언' 및 기존 해석예에 따라, 우리은행이 최근 분기말 (2015.6월말) 현재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동종업종 평균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2015.11.17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가 (최근 3년간 기준 적용) 찬반 6:1로 '동종업종 평균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 →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여 예비인가

◆ 2016.4.14 금융위는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상 요건 삭제

1. 케이뱅크 인가와 향후 개선방안 (2/4)

➤ 현황 및 문제점

◆ 동일인 이슈

• 주주간 출자 약정서 상 이사후보 추천권

- KT, 우리은행, 현대증권이 임추위에 각각 사내이사 1인 추천권 보유,
게다가 KT와 우리은행은 각각 사외이사 1인씩 추천 가능하고, 납입 자본금 8% 이상 주주들도 나머지 사외이사 4인 추천 가능
- 2015.11.13 금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의결권 공동행사를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
 - * 주주간 출자약정서에 이사후보추천권이 다른 이사들의 법적권리를 제한 않으며 공동의결권 행사약정으로 해석 않음을 명시
 - * 모든 주주들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또는 향후 체결 의사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면을 금감원에 제출
 - * 각 주주들은 추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식처분 명령 등 감독당국 조치 감수 확약
- 2015.11.29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 혁신위 견해

- 케이뱅크 주주간 출자약정서가 일정 부분 주주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주들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을 부인했고, 약정 체결 사실 발견 시 감독당국의 제재 조치 감수 의사를 확약하는 문서가 있으며, 그 법적 효력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의결권 공동행사**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1. 케이뱅크 인가와 향후 개선방안 (3/4)

◆케이뱅크 항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함

- 케이뱅크는 비록 인가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렸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 출범 이후 고객의 편의성 제고, 기술기반 서비스 대중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음
- 다만 계속되는 은산분리 완화 요구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위치하고 또 자본금 부족문제 등으로 시장에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향후 발전방안** 제시가 절실함
- 특히 앞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기댐 없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

1. 케이뱅크 인가와 향후 개선방안 (4/4)

◆케이뱅크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인허가 절차의 개선에 관하여는 아래 3절 참조

- 매뉴얼을 작성하고 따름으로써 서류 접수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청 회사가 예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 유권해설 등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투명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혼란을 최소화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

◆은산분리 규제 관련

-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는 혁신위 논의범위를 벗어남
- 다만,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함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함
 - 향후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나,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결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2.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

◆ 다음 대안의 실질적 이행을 적극 권고함

- 투자은행의 신용공여를 고유기능(지분투자, M&A, IPO, Structured Financing, Prime Brokerage 등)과 연관된 것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

◆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 강화를 권고함

- 초대형 IB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유동성 비율과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와 투자자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

3. 인·허가 절차 개선 (1/2)

◆ 수요자 측면에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관련 매뉴얼 정비·보완

- 서류 접수부터 검토, 인가 등에 이르는 전체 단계에서 신청회사가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 제고
 - 서류접수 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 부서 또는 담당자를 신설해 이를 접수하도록 권고함
 -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옴부즈만**이 출범하였는데 (2016.2.26.), 규제개선 관점에서 그에게 인허가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신청인이 매뉴얼을 보고 쉽게 인·허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보완

◆ 인·허가 프로세스 상 외부기구 역할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

- 신규 인·허가 프로세스에 필요한 외부기구 설치 및 운영을 제도화
- 정책당국의 관련 인·허가 진행상황을 해당 기구 보고하고, 회의 내용을 대외에 정기적으로 공개

3. 인 · 허가 절차 개선 (2/2)

※ 사례 : 자산운용사 인가절차 개선

◆ 인가 정책 발표 시 수탁고 요건 공개를 권고함

- 인가 심사 시 적용할 수탁고 요건 산정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인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 신규 진입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 및 수탁고 요건 설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심사기준을 설정

◆ 종합운용사로서 기능 수행에 적절한 인적 · 물적 인프라는 수탁고 규모에 연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의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승인 여부 판단 시 수탁고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함

4. 금융업종별 진입/퇴출 정책 방향

- ◆ 수익성, 경쟁정도,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업종별 진입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금융업종 또는 금융시장별 경쟁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인·허가 정책에 적극 반영함

- ◆ 진입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금융회사 퇴출 및 정리제도의 보완 및 선진화를 권고함
 -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 명령, 예금자 보호 외에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 부실화에 대비한 회생·정리 계획, 채권자손실분담 제도 등 도입 필요

5.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1/2)

- ◆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되, 제조는 인가를 유지하고 기타 업무는 신고, 등록 등으로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
-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을 직접판매, 판매대리·중개, 자문하는 사업자로 구분됨
 - 판매대리·중개, 자문업자 등의 경우 영업행위 준수 의무 외에 자본금이나 인적·물적 설비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은 불필요하므로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진입규제 대폭 완화** 필요
 - 금융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병행하여 소비자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함
 - 특히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현재 충분히 진입이 이루어져있고,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 또는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입요건 등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정비해 나갈 필요
 - 기존의 금융상품 제조회사와 신생 핀테크 기업, 그리고 판매대리·중개, 자문업자 등이 **Open API**를 통해 유기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금융상품 제조·판매·자문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고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함

5. 진입 및 영업 규제 of 네거티브화 (2/2)

- ◆ **진입 규제의 완화와 동시에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기존 금융관련법을 순차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마련을 권고함**
 - 모든 금융관련법의 '금지항목' 설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KDI, 2016)
 -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핀테크 분야에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제도화하는 방식도 고려
- ◆ **이외에도 정책당국은 제도 자체의 네거티브화에 그치지 말고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 등 목적을 제외하고는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네거티브화가 금융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하도록 권고함**
 - 금융업법 내 진입 및 영업 규제가 네거티브 제도로 완화될 경우 법상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수행 가능성 여부 판단에서 정책당국의 해석이 매우 중요함
- ◆ (금융위) 인가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가절차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18.1분기)
- ◆ (금융위) 금융혁신서비스 시범인가, 개별면제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18.上, 국회 제출)
- ◆ (금융위)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18.3.20)

IV.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IV.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1.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2.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등 선임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권 감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1.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1/3)

◆ 금감원 채용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 채용 면접 시 채용 담당부서(인사팀)를 제외한 **관련 직군 팀장 이상 직원을 내부 면접위원으로 활용**하고 전문가를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필요
- 채용 담당자 및 면접위원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등 지인(知人)이 지원하는 경우 신고를 통한 회피 또는 제척 절차가 필요하며, 면접위원은 면접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채용 절차에 대해 감사실이 채용 전(全) 과정을 감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 전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되도록 할 필요
- 채용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제도**를 활성화하여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필요
 - 채용 관련 외부 청탁 받을 때 이 사실을 익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올리거나 감찰실 신고 절차 마련
- **채용 비리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파면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 필요
 - 채용 비리 연루 지원자 합격 취소 조치 필요

◆ (금융위) 금감원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부정행위시 사후에도 합격이 취소됨을 명시('18.上)

1.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2/3)

◆금감원 직원 인사 행정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필요

- 채용이나 승진 등에서 외부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외부 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부 체계 구축
-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약화시켜 정치권 등 외부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게 하는 문제가 있어 인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금감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마련

-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자체 개혁이 필요
 - 감사원 및 기타 외부에서 지적인 인력 및 조직 문제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기능별 직군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직군 중심의 인사 이동 필요
 - 감독, 검사, 시장, 회계, 정보기술(IT), 총괄, 국제, 소비자보호 등
 - 감독과 검사 직군의 경우에도 은행, 증권, 보험, 기타로 나누어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
- 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독·검사 등 경험을 쌓도록 하고, 선임조사역 3~4년 차 정도에 전문 분야(직군, 권역 등)를 선정하여 가급적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전문성 제고

1.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3/3)

- 특히 검사 직군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사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퇴직까지 계속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아울러 금융기관 근무 경력(10년 이상) 있는 외부 전문가를 **검사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
 - 검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즉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소한 위규사항에 매달리는 문제가 지속) 금감원 신뢰성에 흠이 발생
-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4급(입사 6년차 정도) 이상인 직원부터 「공직자윤리법」 적용이 됨

◆ 금융감독원의 내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

◆ 금융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도 점검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도 금융감독원에 상응하는 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 (금융위)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부문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제도 개선 ('18.1월, 관계부처 합동)

2.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등 선임

◆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의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기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준정부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공모 → 임원추천위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등 일관된 절차 진행
- (공공기관운영법 非적용 기관) 개별법에 따라 선임하는 산은, 기은, 한국거래소 등은 합리적 개선 방안 강구
- (한국거래소의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함
 - 현재 정관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5인, 관련협회 추천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정함
 -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함

◆ 2017.8.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 개선

-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맞춰 **금융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적극 도입**을 권고함
 - 국정과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1/4)

◆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출 제도의 개선

-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예: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을 신설하여 무자격자 낙하산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별 내부규범 마련
- 은행법을 정비하여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
 - 은행법 제35조의 4 조항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려운 문제 →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 추진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2/4)

◆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기업과 투자자, 근로자, 채권자, 소비자 등 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권고함

- 공적 기능이 강한 금융회사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불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임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필요
- 기존 회장(최고경영자)의 참호구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회장후보 및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임
- 따라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 및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 풀(Pool)을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 군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하여 주주가 추천한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 ('18.3.15)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3/4)

◆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 권고

-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인 서울시에 도입된 바 있지만 아직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에 도입된 적은 없음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민영기업에도 근로자가 근로자이사제도를 운영
-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임
-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계에 '경영 의사결정 참여'라는 권한과 동시에 '조직 실적 개선' 책임 부여
 -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내부 견제가 이루어져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근로자도 경영의 결과에 책임져야 하므로 노사간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갈등 경감 기대
 - 경영진이 갖지 못한 근로자의 관점, 경험, 암묵지를 통해 생산성도 개선될 수 있음
 - 금융회사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채택하면 '노동존중' 문화가 확산되어 노사를 운명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

◆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 권고

-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등 다양한 장치에 대한 논의 바람직
- 근로자추천이사제도의 기존 회사법 체계와 조화에 대한 논의 필요

3.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4/4)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을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확대

- 2018년 도입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트십 코드에 '기금 위탁운영 시 민영 자산운용사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기관투자자가 스튜어트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유인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뿐 아니라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도 견제하는 역할이 기대됨

4. 금융권 감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권 및 경영진의 영향으로 선임되는 '낙하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대표이사) 배제
-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록(녹취록) 공개
- 감사위원 자격을 제한(예: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등)

◆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체 감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

-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 및 예산 운영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금융회사 내부 감사기능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금감원 검사 최소화 효과를 기대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 ('18.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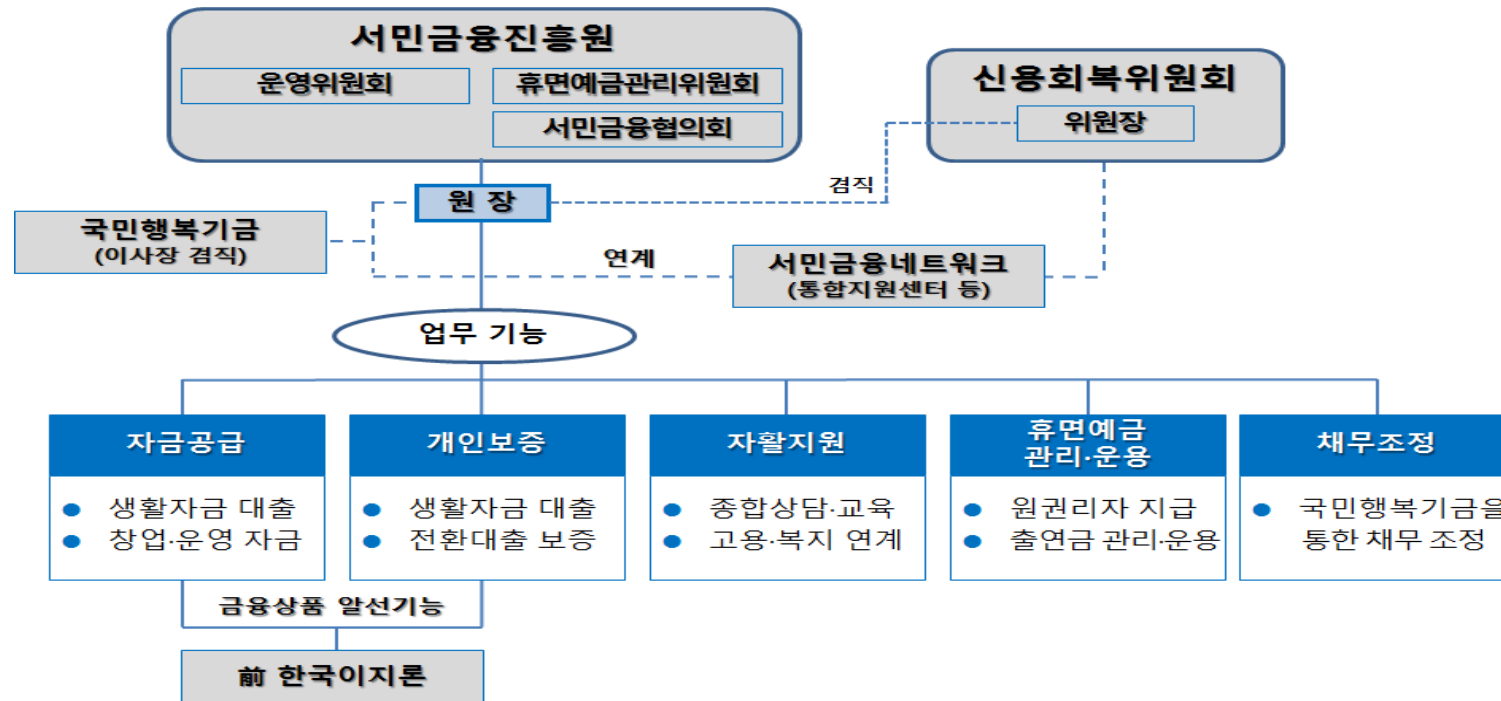
V.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V.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1.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2.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 지원
3.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4.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5.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
6.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
7.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 개선
8.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
9. 키코계약의 금융감독상 문제점 점검

1.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1/5)

➤ 현황: 서민금융진흥원 구조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1.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2/5)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

- 두 기관장의 겸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상충 관련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강구
 -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장의 별도 선임 추진
 - 다만 채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두 기관 간 협조 체제는 유지 내지 강화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
 - 이미 부실화된 경우는 물론, 부실 발생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
 - 연체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채무자가 채무재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담체제**를 구축
 - 부실 이전 단계에서도 수입·지출관리, 저축·투자, 대출 등 중요한 금융의사결정에 조언 제공하는 전문가 서비스에 가계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책임지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신용상담 네트워크 구축 추진

1.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3/5)

◆국민행복기금 정리

- 공공부문이 채권추심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는 항시 문제의 소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업방식은 지양할 필요
- 국민행복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 위탁을 지양하고 추심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채무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유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
- 국민행복기금의 잔존 재원은 바뀌드림론 및 소액신용대출 사업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

1.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4/5)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체채권 정리 체제 구축

- 장기 연체채권 정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
 -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반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작용 발생 가능
 - 정부 및 공공부문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은 조용히 정리
- 민간 금융회사 보유 장기연체 채권은 민간 기구가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은행 등 금융권이 민간 기구에 기부하고 그 자금으로 민간 기구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 소각하는 체제 구축
 - 금융회사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 부여 검토
- 어떤 경우든 장기 연체채권의 정리는 조용하게 진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1.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5/5)

◆정책서민금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점검 후 근본적 재설계 필요

-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퀴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 엄밀히 분석
- 이를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미소금융대출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 필요

- 우리나라 금융환경에서 미소금융대출이 금융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 환경은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 성과를 보인 후진국과는 크게 다른 상황
 - 미소금융대출의 대상이 되는 영세자영업 영역은 낮은 진입장벽과 저생산성으로 금융 논리로는 자금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
 -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및 은행 계열 재단이 적절한 대출처를 찾지 못하여 가용자원 절반 가량을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은 금융적 관점에서 자금공급의 과잉상태를 시사
- 미소금융대출과 햇살론의 자영업자 대출 간 역할분담 방안 검토도 필요
 - 미소금융대출은 사회적 금융 분야 대출 혹은 금융수단을 결합한 복지정책 영역으로 전환 유도
 - 기존의 미소금융대출은 햇살론 확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

◆(금융위) 그간의 성과·한계 등을 고려하여 서민금융체계 개편방안 마련('18.下)

2.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 지원

◆ 사회적 금융이 다수 부처에 나눠진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함

- 사회적 금융 지원펀드 설립
-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신설 또는 기존 금융조직(예: 신협 등)에 대해서 새로운 감독기준을 정립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펀드를 통하여 지원
- 임팩트 투자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임팩트 투자 활동에 대하여 금융법령 적용 완화를 검토
 - 민관 합동으로 사회성과 측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유관기관에 제의

◆(관계부처 합동) '18.2.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3.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1/2)

✓ 신용협동조합 감독 체계 개선

◆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대정신, 그리고 민주적 운영,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변경

- 선거과열에 대한 우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소
- 선거가 임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변경된 선거제도 적용시점을 다음 중앙회장 선거(2022.2.)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 정비

◆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강화 정책기조를 적극 시현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본 조세특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 대안 도출

-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원래 취지를 감안하면 비과세 조치의 영속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부여 고려

3.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지원 (2/2)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관련 이슈

◆외부로부터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고자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타 상호금융권 대비 높은 기금적립률(1.56%, 2017년 6월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는 차입이 불필요하나 대규모 부실사태를 대비하여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

◆정부로부터의 지원 근거 확보를 전제로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료율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

- 목표기금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신협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상호금융권 최고의 출연요율을 동 업계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여 매년 절감되는 300여억원 중 일부는 한시적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사용하고 일부는 조합원 복지향상과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4.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2017.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 <참고>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국정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손해 추산 금액의 수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 피해규모와 범위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식을 자산이나 이익의 일정 부분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주모자 및 주요 연루자에 대해서는 금융관련 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 검토
 - 제재 원인이 되는 행위와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공표

4.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2/2)

◆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전환 등 도입 필요**

- **가급적**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할 필요
-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
-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필요
 - 해당 사항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일정금액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을 검토**

- 이는 금융회사의 소송남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
- 현행 분쟁조정절차의 독립성 및 중립성,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반대에 대응하여 적용 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으로 한정 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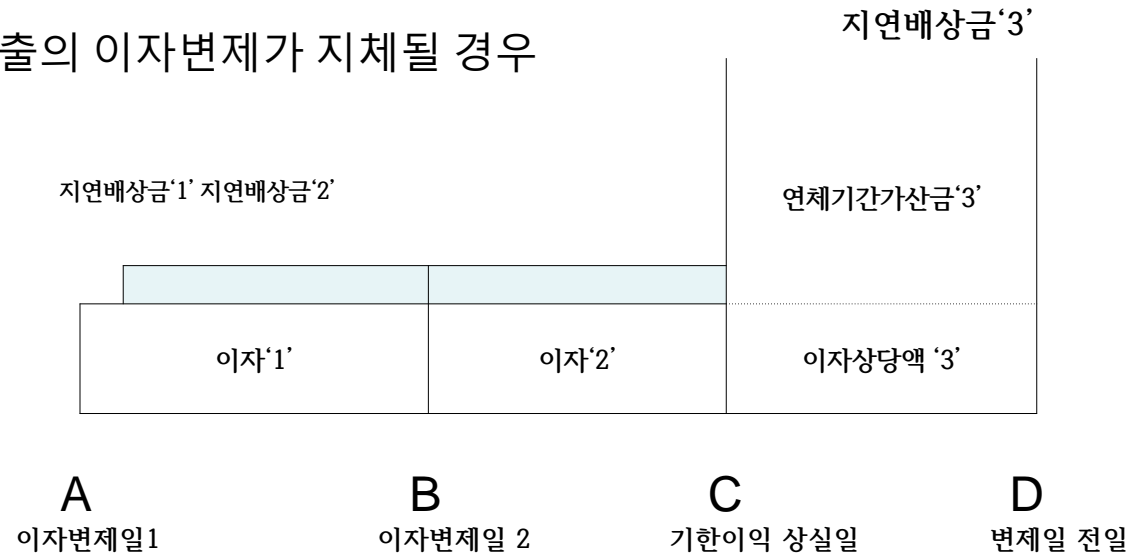
◆ (금융위)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지속)

5.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 (1/2)

➤ 현황과 문제점: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출이자 변제방식

- 지나치게 높은 연체가산율,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익 상실시점
-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제순서: 비용 → 이자 → 원금

<그림 V-2>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변제가 지체될 경우



- * 이자 '1', 이자 '2' : 대출 원본에 대하여 약정이자율 적용
- 지연배상금 '1' : 이자 '1' 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 6%(1개월미만)를 더하여 산출
- 지연배상금 '2' : 이자 '2' 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 7%(1개월이상)를 더하여 산출
- 지연배상금 '3' : 대출 원본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 7%(1개월이상 3개월미만)를 더하여 산출

5.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 (2/2)

◆ 원금 연체 시 채무변제 총당 순서 개선

- 기한이익 상실시점의 이연을 검토
- 기한이익 상실 시 상환 금액을 일률적으로(비용 → 이자 → 원금) 총당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과다한 채무불이행자를 배출하는 방식 개선
- 금융기관은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하여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금융기관이 정상대출로 복원할 수 있는 변제순서를 설명하고, 차주가 유리한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 방식 개선

- 대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개선
- 가산금리 내용과 산출구조를 공시하도록 개선

◆(금융위) 원금 연체시 채무 변제순서 개선방안 마련('18.1월)

6.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 (1/2)

◆ 불완전판매 상품 정보 공개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 불완전판매 민원의 경우 단순 민원 건수 공개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원공개 방식을 개선**
 - 민원발생 DB를 구축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이 제기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금융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처벌 필요**
 - 불완전판매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규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을 엄격히 부과하고, 분쟁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조

◆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실효성 제고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보험료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인 **자문의 소견서**의 투명성 확보
 - 소비자가 청구한 진단서와 보험회사의 자문의사 소견이 불일치하고, 소비자가 보험사의 자문의사 소견에 불복하는 경우, 그 소견서의 내용과 자문의사의 소속병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사로 구성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 신설 → 중립적 입장의 의료자문을 받아 분쟁조정에 활용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6. 보험회사의 영업관행 개선 (2/2)

◆저축성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꺾기 판매 등 법규에 위배되는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KPI 항목 설정 개선을 유도**
- 저축성 보험상품의 사업비, 위험수당 공제 등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필요

◆보험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 확보

- 보험사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
 -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에게 처음부터 손해사정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감독을 강화
 - 손해사정인 선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보 위해 손해사정 착수 시 바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개선
- **중립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이 독립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 강화**

7. 금융권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경영평가(KPI) 방식 개선

- ◆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고려하여 KPI지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KPI지표 개편을 유도하도록 권고함

8. 상호금융권 이용에 따른 일률적 신용등급 강등 문제 개선

◆은행/비은행 여부에 따른 신용등급평가 차별 개선

- 개별 차주의 과거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평가 체계 개발 필요
- 개별 차주 주거지,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

◆(금융위) '개인신용평가체제 개선방안' 마련('18.1.17)

9. 키코계약의 금융감독상 문제점 점검 (1/2)

- ◆ 키코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 시 조치를 시행
-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의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특히 당시 입은 손실로 인해 지금도 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향후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객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를 긴급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함

9. 키코계약의 금융감독상 문제점 점검 (2/2)

◆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고객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
- 불완전판매 실태 등을 포함하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제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
-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2017.8)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을 추진**함

※ <참고>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국정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20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VI. 마무리

1. 남아 있는 과제들

◆ 혁신위 권고내용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방안을 검토·마련

- ① (차명계좌) 국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 ② (은산분리) 국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규제완화의 득·실을 심도 있게 검토
 - ③ (근로자추천이사제) 이해관계자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
 - ④ (키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요청시 상황 파악·필요한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 특히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 의견도 감안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

◆ 기타 이슈

- 기업구조조정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2. 향후 개혁과제

- ◆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토 · 추진
- ◆ 금융규제체계 개혁 검토 · 추진

감사합니다.

Q & As